

보도시점 2026. 7. 10.(금) 조간
2026. 7. 9.(목) 12:00

배포

2026. 7. 9.(목)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절반 이상 A등급' 양질의 서비스 제공받는다

-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

- 시설 운영 수준 전반적으로 양호, 향후 인권 중심 평가체계 강화 -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전체 시설의 51.4%가 A등급을 받아 전반적인 운영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우수시설에는 혜택을, 미흡시설에는 맞춤형 컨설팅과 지자체 합동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향후 인권 평가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평가대상이었던 4개 시설유형*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평가대상) 아동생활시설(274개소), 장애인거주시설(540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450개소) 및 장애인단기거주시설(156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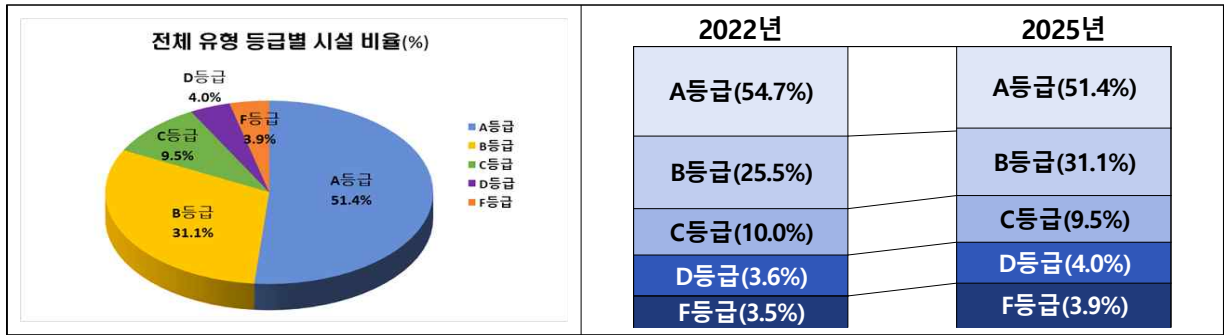
** 서울·경기 관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시·도가 자체적으로 별도 평가 실시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22년~'24년)의 운영사항을 5개 영역*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가 업무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 있다. 최종 평가 결과는 총점에 따라 동일한 시설 유형별로 5개 등급(A~D, F등급)으로 부여하고, 시설별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

* ①시설·환경, ②재정·조직,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이용자 권리, ⑤시설운영 전반

2025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점 평균은 86.8점으로 전기 평가(2022년)와 유사한 수준(87.9점)이며, 전체 시설의 51.4%가 A등급을 받아 시설 전반의 운영 및 서비스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2022) 대비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 증감 현황 >



※ (A등급) 90점 이상, (B등급) 80점 이상~90점 미만, (C등급) 70점 이상~80점 미만 (D등급) 60점 이상~70점 미만, (F등급) 60점 미만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재정.조직운영’ 영역의 평가 기준을 강화*한 결과, 총점 평균은 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영역별 점수에서도 ‘재정.조직운영’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평가기준 강화) 상대평가 지표 점수구간을 세분화(4단계→5단계), 최하점수 조정(1점→0점)

< 전기(2022) 대비 평가영역별 평균 점수 증감 현황 >

(단위 : 점)

구분	총점 평균	영역별 평가점수				
		Ⓐ시설·환경	Ⓑ재정·조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시설운영
증감	△1.1	△2.9	△5.8	0.6	2.0	-
2025	86.8	90.7	77.6	91.2	89.8	89.6
2022	87.9	93.6	83.4	90.6	87.8	89.6

2025년에 처음 평가받은 신규시설은 89개소(6.3%)로 기존 시설보다 총점 평균이 13.1점 낮았으며, 장애인거주시설이 신규 시설과 기존 시설 간 평균 점수 차이가 31.9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기존·신규 시설 수 및 평가점수 현황 >

(단위: 개소, 점)

구분	시설 수			평가(평균)점수		
	소계(A+B)	기존(A)	신규(B)	기존(C)	신규(D)	증감(C-D)
합 계	1,420	1,331	89	87.6	74.5	13.1
장애인거주시설	540	524	16	88.4	56.5	31.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50	403	47	86.9	76.1	10.8
아동생활시설	274	265	9	86.8	81.0	5.8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56	139	17	88.5	83.4	5.1

전기 평가에서 미흡 등급(D·F등급)으로 나온 시설(58개소)이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후에, 이번 평가에서 평균 점수가 13.8점('22년 58.3점 → '25년 72.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춤형 컨설팅이 미흡 시설의 운영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흡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때, 시설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공무원도 방문하도록 하여 더욱 강화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용자 권리' 영역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인권 전문가를 활용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한다. 평가 점수가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 시설과 전기 평가 대비 평가점수 상승 폭이 상위 3%인 개선 시설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우수) 시설별 최대 700만 원, (개선) 시설별 최대 350만 원(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 변경 가능)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시·도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서울·경기 관할 시설의 평가 결과도 함께 공개

유주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가운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라며, “향후에는 인권 영역 평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 및 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 체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2. 전기 대비 '25년도 시설별 평가등급 현황

담당 부서 <총괄>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책임자	과 장	권혜나 (044-202-3250)
		담당자	사무관	이은지 (044-202-3254)
<아동생활 시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	책임자	과 장	장영진 (044-202-3430)
		담당자	사무관	정호진 (044-202-3432)
<장애인거주· 단기거주시설>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춘희 (044-202-3310)
		담당자	사무관	유미혜 (044-202-3309)
<장애인작업 재활시설>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044-202-3320)
		담당자	사무관	안미경 (044-202-3328)
<평가수행>	중앙사회서비스원 시설평가부	책임자	부 장	이찬영 (02-2271-9056)
		담당자	과 장	서경원 (02-2271-9058)



□ **제도 개요**

- (목적) 정기적 평가로 시설운영 효율화 및 이용인 제공 서비스 질 제고
-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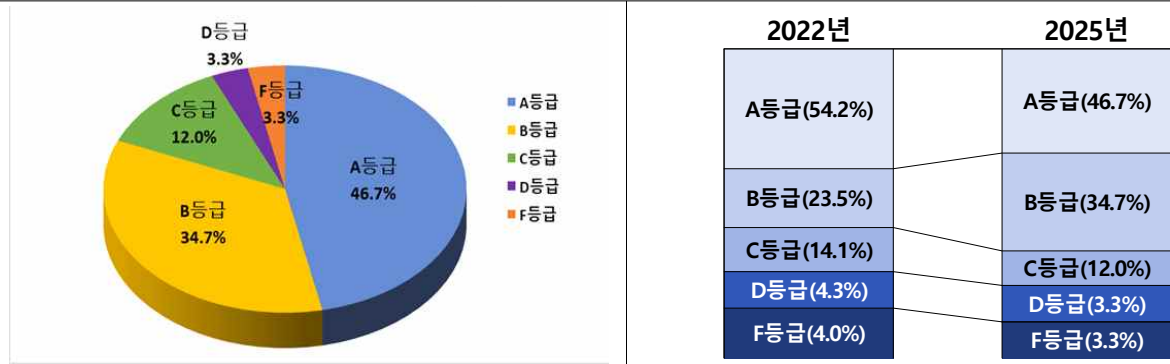
- (평가대상) 장애인거주시설 등 15개 유형 4,000여 개소(3년주기)
 - * 최초 설치된 지 3년 이상이며, 정상 운영 중인 시설 전수 평가 수행

구 분	9기(14개 유형)			10기(15개 유형)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시설 유형 (지표 기준)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그룹홈 장애인그룹홈 정신재활그룹홈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단기거주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단기거주
시설수	1,868개소	680개소	1,420개소	약 2,000개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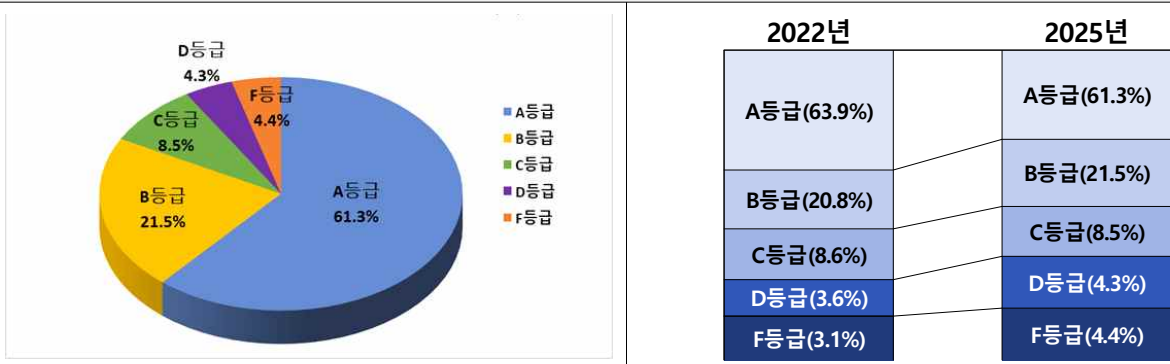
*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은 개별법이나 지침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별도로 평가
 ** 서울·경기 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지방정부가 자체평가

- (평가절차) 지표개발→ 자체평가→ 현장평가→ 확인평가→ 결과공개
- (평가방법) 시설 자체평가 후, 현장평가단이 방문 평가
 - * (평가영역) ①시설·환경, ②재정·조직,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이용자의 권리, ⑤시설운영 전반
 - ** (현장평가단) 3인(학계, 지자체 공무원, 현장전문가)이 1팀으로 구성
- (평가결과) 절대평가로 5등급(A~D, F) 부여
 - * 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 등을 통해 평가결과 공개
- (사후관리) 우수시설 등에는 인센티브 지급, 미흡시설(D,F)은 컨설팅 실시
 - * (우수) 총점 상위 5% 내외, (개선) 이전 평가 대비 개선점수 상위 3%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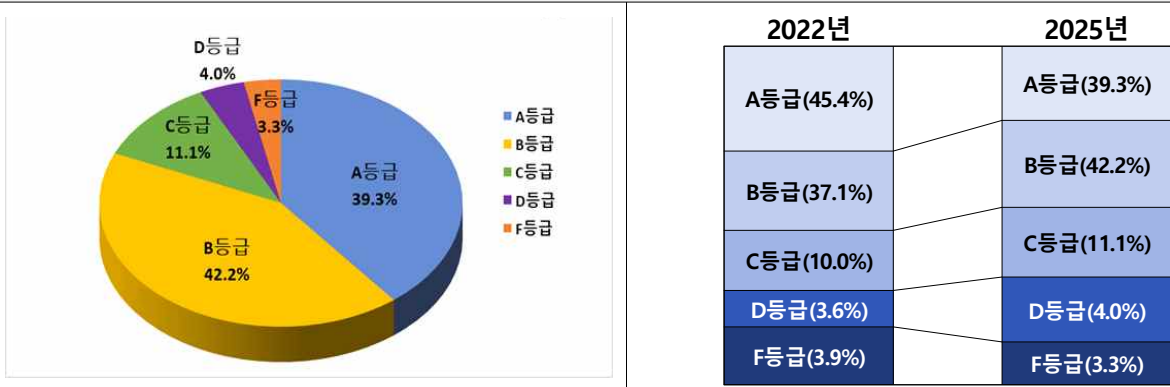
1. '25년도 아동생활시설 평가등급 분포



2. '25년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등급 분포



3. '25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등급 분포



4. '25년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평가등급 분포

